성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7. . .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정이유

「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 및「지방자치법」제136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 부담 경감 및 영농편익 도모와 이용률 제고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개선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기여(안 제1조)

나.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농업기술센터에 두도록 함(안 제2조)

다. 운영 및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함(안 제5조)

라. 1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하고 사용허가 기간은 2일로 함(안 제8조)

마. 임대조건 불이행시 다음과 같이 제한함(안 제8조)

- 1차 : 사용정지 3개월
- 2차 : 사용정지 6개월
- 3차 : 사용정지 1년

바. 사용료는「별표1」에 의거 징수함(안 제9조)

사.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짐(안 제15조)

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농기계를 보험에 가입함(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36조
(발췌 별첨)

나. 예산관련사항 : 협의 완료

다. 기 타

(1) 제정조례안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3)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07. 6. 4 ~ 6. 23(20일간)

· 예고방법 : 성주군 공보, 성주군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 예고결과 : 의견없음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3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성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성주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성주군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이하“농기계”라 한다)라 함은 본 조례에 의하여 대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농기계 임대 사용료”(이하“사용료”라 한다)라 함은 임대 농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성주군금고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임대사업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 임대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군비로 한다.

② 임대사업 및 농기계 임대장비와 부속건물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성주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 기록·관리 한다.

④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제6조 (관리요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기계교관을 운영 관리자로 지정 할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 및 교육) ①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농기계사용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을 사전 교육 후 출고 시켜야 한다.

제8조 (사용허가 기간 및 기준) ① 농기계의 임대 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하며, 1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하고 사용허가 기간은 2일로 한다.

②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성주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을 말한다.

③ 임대사용 목적은 농업용에 한한다.

④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과 입고일 까지 일단위로 계산 하되 임대기간은 2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청 대기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⑤ 임대 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⑥ 사용자가 임대한 농기계를 사용 후 지정한 기한 내에 입고하지 않는 등 임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한 할 수 있다.

1. 1차 : 사용정지 3개월
2. 2차 : 사용정지 6개월
3. 3차 : 사용정지 1년

제9조 (사용료) ① 사용료는 사용자로부터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하고 성주군 금고에 다음날 중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0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징수기준에 의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농기계의 운반비용 및 사용 유류대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그 사유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하는 경우

2. 재해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사용료의 2분의 1감면
2. 제1항 제2호의 경우 : 사용료 면제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3. 출고일 이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사용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사용하지 않은 일수의 사용료
2. 제1항 제3호의 경우 :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사용료

제12 (기금조성) ① 군수는 내구연수 경과 후 임대농기계의 재구입을 통한 사업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임대사업 수익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한다.

③ 군수는 필요로 할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에 보전할 수 있다

제13조 (농기계의 반환) ① 농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
4.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는 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준수사항의 이행과 농기계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임대농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 한다.

제16조 (안전사고 대비) 군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농기계를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제17조 (비치대장) 농기계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1.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 : 별지 제1호 서식
2.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 별지 제2호 서식
3. 농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 : 별지 제3호 서식
4.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 별지 제4호 서식
5. 농기계 임대료 수납대장 : 별지 제5호 서식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농기계 구입금액 기준 임대료

(단위:원/1일)

농기계 구입금액	임 대 료	비 고
50만원 미만	5,000	
50만원 이상 ~ 100만원미만	10,000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20,000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30,000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40,000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50,000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60,000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70,000	
2,5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80,000	
3,000만원 이상 ~ 3,500만원 미만	90,000	
3,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100,000	
4,000만원 이상 ~ 4,500만원 미만	110,000	
4,5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120,000	
5,000만원 이상 ~	150,000	

【별지 제1호 서식】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

임 대 인		임 차 인	
성주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임 대 차 농 기 계			
농 기 계 명		수 량	
부속작업기		수 량	
		수 량	
		수 량	
임대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		
임 대 료			
농 기 계 사 용 계 획			
기 계 명			
작업종류			
작업장소			
작업면적	ha(일 평)		

성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제7조제1항에 의거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아래 사용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후 보관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내에 보관한다.(1일이상 사용할 때)
3. 임차 후 발생한 고장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5.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6. 임차인은 농기계 사용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사용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9.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 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임대농기계를 대상으로 농기계종합공제에 의무적으 로 가입하여야함.
10.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인 : 성주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인)

임차인 : (인)

【별지 제2호 서식】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일련번호	계약년월일	임차인		임대기계(기종 및 대수)				임대기간	임대료(원)	반납예정일	반납확인
		주소	성명	기계명	대수	부속작업기	대수				

【별지 제3호 서식】

농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

기종명	형 식	기대번호	작업내용	사용기간	면제사유

성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제10조에 의거 상기 임대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휴대폰 :)

성 주 군 수 귀하

※ 첨부 : 감면 증명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임대 농기계 관리대장

(　　)월

일자	보 유 기 종 별 현 황											
	“예”트랙터(　)											
	임대	회수	소계	임대	회수	소계	임대	회수	소계	임대	회수	소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별누계												

※ (　)은 보유대수, 월별누계=잔월누계+ 금월/전월누계임.

【별지 제5호 서식】

농기계 임대료 수납대장

일련번호	년월일	농기계임대농가및작목반		임대기종		임대기간	임작업면적(평)	임대료(원)	수납확인자	소계(원)	비고
		성 명	주 소	기종명	수량						

※ 임차인은 임대료 수납확인필증을 반드시 각각 보관한다.